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5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전용기·윤재갑·신정훈

홍기원 • 박용진 • 한준호

김윤덕 · 장경태 · 유정주

임종성 · 김민철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와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서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으로 3,930가구까지 늘었으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에 있음.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현행 대출이나 세금 규제 압박에서 자유로워 투기성 부동산 매입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역차별 논란마저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1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소득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이 취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5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 | |
|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 |
| 해당하는 표준에 다음 각 호에 | |
|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 |
|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 |
| 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 | 8 |
| 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 | |
| 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 | |
| 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 |
|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 · 임 | |
| 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 |
|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 | |
| 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 |
|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 |
|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 |
|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 | |
|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
|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 | |
| 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 |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 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 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 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 로 한다. <단서 신설>

| <u>다만, 외국</u> |
|----------------------|
| 인(「소득세법」 제1조의2제2 |
| 호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 |
| 다)이 취득할 경우에는 다음 |
|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에 |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50 |
| 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 |
| 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
| <u> 다.</u>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가. ~ 다. (생 략)